

2026년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대전 팁스타운」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창업진흥원장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1 대전 팁스타운 개요

- **목적**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창업·투자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시키기 위하여 대전에 개방형 창업지원 공간 조성

- (위치)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내)
- (대지) 3,300㎡ (1,000평), (연면적) 3,873㎡ (1,174평)
- (구성) 입주공간 22개실(창업기업 투자사지원기관 등) 및 회의실 등



- **구성** : 사무공간, 회의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컨퍼런스 홀 등

층수	층별 시설 현황 ([붙임 1] 참조)
1층	코워킹 스페이스(43석), 카페 라운지, 팁스 홀(20명 수용), 회의실(2개), 안내데스크
2층	코워킹 스페이스(25석), 회의실(1개)
3층	타운 홀(100명 수용), 회의실(1개)
4, 5층	입주실(22개), 회의실(8개), 카페테리아, 휴게실(수면·샤워)
옥상	플레이그라운드, 옥상정원

- **모집 규모** : 독립실 3실 이내 (1실 1개사 입주)
- **입주 위치** : 대전 팀스타운(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내)
- **입주 대상** : 창업기업 (투자사, 지원기관 등은 해당없음)
- **입주 형태** : 본사 이전 원칙
 - * 단, 본사 이전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하여 이전 가능
- **입주 시기** : '26. 4. 1. 예정
 - *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7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를 연기할 수 있음
- **입주 기간**
 - 기본 2년(매년 연차평가 실시), 1년씩(최대 2회) 연장
 - * 2년차 기업 대상 성과평가 후 승인 시 1년(최대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 ** 단, 계약 기간 내 업력 요건(창업기업 7년,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대상에서 제외
- **입주 조건**
 - 입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 팀스타운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등록을 완료 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독립실의 경우 상주 근무인력 최소 4명 이상 유지 필수
(선정 평가 시, 상주 근무인력 수에 따라서 구간점수 부여 예정)
 - * 입주 3개월 경과 이후 상주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차·성과평가 시 계약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임대료 및 관리비**
 - **입주실**(4층 : 총 2실(7인실 1실, 9인실 1실), 5층 : 9인실 1실)
 - **임대료** : 전용면적(m²)당 6,000원(부가세 별도)
 - * 입주 보증금 : 임대료 6개월분(부가세 제외)

- 관리비 : ①전기료는 독립실별 실비 부과, ②공용관리비(수도, 청소 등) 전용면적(m²)당 2,000원(부가세 별도)

< 입주실별 임대료 및 관리비 >

(단위: 원, 부가세 별도)

전용면적	7인실				9인실			10인실
	44.37m ² (약 13평)	44.51m ² (약 13평)	45.13m ² (약14평)	46.02m ² (약14평)	51.52m ² (약16평)	52.20m ² (약16평)	53.10m ² (약16평)	62.7m ² (약20평)
월 임대료	266,220	267,060	270,780	276,120	309,120	313,200	318,600	390,780
공용관리비	88,740	89,020	90,260	92,040	103,040	104,400	106,200	130,260
합계	354,960	356,080	361,040	368,160	412,160	417,600	424,800	521,040
전기료	매월 실비 부과							
통신·인터넷	입주기업별 별도 준비, 기본회선만 제공(WIFI)							
보증금	월 임대료 6개월분(부가세 제외)							

* 금번 공고에 해당하는 독립실은 파란색 테두리 부분 참고

□ 입주기업 지원내용

- (독립실 기본 가구) 책상, 의자, 회의용 테이블, 캐비닛 등 비치
 - * 7인실 예시 : 사무용 책상 및 의자(7세트), 회의용 책상 및 의자 (1세트) 등
- (공용 인프라) OA존, 회의실, 컨퍼런스홀, 편의시설 등 사용 가능
 - OA존 : 팩스, 복합기(용지 제외), 파쇄기 등 사무기기 무상 사용
 - 회의실 : 회의용 TV, 빔 프로젝트, 화상회의 시설(웹캠, 스피커) 등
 - 컨퍼런스홀 : 투자설명회 및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상시 진행할 수 있는 대형 공간 사용 가능
 - 편의시설 : 1·4·5층 카페테리아(커피머신, 텀블러 세척기, 텀블러 소독기, 전자레인지, 공용냉장고 등), 4층 중앙정원, 4·5층 휴게공간(남·여 휴게실, 샤워실), 6층 플레이 그라운드(옥상정원, 헬스케어 기기) 등
- (성장촉진 프로그램) 입주기업 업력, 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투자사 및 창업지원기관 네트워킹 제공 등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1.29.)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참고 2] 참조)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신산업 분야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AI	· AI 모델·인프라 · 양자·보안·네트워크	· 반도체 · 로봇틱스 · 모빌리티
Bio	· 생명·신약	· 헬스케어
Contents	· 콘텐츠	
Defence	· 방산·우주항공·해양	
Energy	· 친환경	· 에너지·원자력·핵융합
Factory	· 첨단제조(센서·공정 등)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9.1.29.~2026.1.28. (신산업 분야 : 2016.1.29.~2026.1.28.)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
 -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신청 분야

구분	층수	면적	입주가능 기업 수
9인실	4층, 5층 각 1실	52.2㎡ (약 16평)	2
7인실	4층	46.02㎡ (약 14평)	1
합계 (금회 모집)			3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접수 기간** : '26.1.29.(목) ~ '26.2.12.(목) 16시까지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입주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참고)

* 모집공고에 첨부된 입주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2] 양식 참고)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별첨 1 참조)	용량제한 30MB
②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 시)	파일 첨부 (별첨 2 참조)	용량제한 30MB
③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별첨 2 참고) 별도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명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 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서류평가, 발표평가)에만 적용

< 입주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3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내외)	선정 확정 심의
'26년 2월 3주	'26년 2월 4주	'26년 3월 2주	'26년 3월 3주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계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① **요건검토**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평점 70점 이상, 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 통과)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약 3주)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필요

** 창업기업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별도 제출 안내 예정**

③ **발표평가** :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및 최종 선정 대상자 확정 (평점 70점 이상)

-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입주 적합성 등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0분 내외 예정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10분 내외)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동 모집 공고에 접수하여 평점 70점 이상으로 발표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대전 팁스타운 우선 입주기업으로 선정 우대**

* 공고일 기준 팁스(TIPS) 사업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팁스(TIPS) R&D, 프리팁스 선정 기업(중단, 포기기업 제외)

** 공고일(26.1.29.) 기준으로 팁스(TIPS) 사업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에 한하며, 서류평가 통과 시 팁스(TIPS) 사업 선정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평점 고득점 순, 선정 우대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팁스(TIPS) 사업 선정기업이 발표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 우선 입주기업으로 선정

- 최종선정된 기업은 입주확약서를 제출하며, 최종선정 기업 중 미입주 기업이 발생할 시 차순위자를 입주기업으로 선정

- 최종선정된 기업은 별도 안내에 따라 입주공간 사전 방문 가능하며, 입주할 호실은 동일 규모(인실) 신청기업 간 추첨을 통해 배정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대전 틱스타운 입주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동기 ○ 시장 및 고객 분석 적정성 ○ 개선사항 발굴 적정성 등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아이템 차별성 및 우수성 ○ 창업아이템 기대효과 및 사회기여도 등
성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아이템 추진현황 및 사업성 ○ 투자유치(매출발생) 실적(또는 계획)의 적정성 등
입주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역량 및 추진의지 ○ 기업(팀) 구성현황(계획) 적정성 ○ 대전 틱스타운 입주 필요성 및 활용 계획 등

□ 지원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팁스(TIPS) 사업 선정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단,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창업진흥원에 신청 가능
- 창업진흥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팁스타운 운영규정」, 창업진흥원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대전 팁스타운 입주 후 입주 관련 법률·지침·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입주공간의 활용(임직원 미상주 등)이 극히 저조한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공고 문의) 창업진흥원 대전팀스팀(042-720-4561, 4562, 4563)

<p>1층</p>	<p style="text-align: center;">WELCOME TO TIPSTOWN</p> <p style="text-align: center;">업무공간, 휴게공간, 컨퍼런스 홀 등으로 구성된 개방형 공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코워킹 스페이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업무공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카페·라운지</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개방형 휴게공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안내 데스크</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입주기업 편의 제공</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팁스 홀</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개방형 이벤트 공간</p> </div> </div>
<p>2층</p>	<p style="text-align: center;">WELCOME TO TIPSTOWN</p> <p style="text-align: center;">업무공간, 휴게공간,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개방형 공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코워킹 스페이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업무공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회의 공간</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회의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휴게 공간</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옥외 휴게 공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옥외 테크</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캠퍼스에서 접근이 용이한 옥외 이벤트 공간</p> </div> </div>
<p>3층</p>	<p style="text-align: center;">WELCOME TO TIPSTOWN</p> <p style="text-align: center;">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진행 가능한 소통형 공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옥외 테라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옥외 휴게 공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타운 홀</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개방형 이벤트 공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라운지</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교류·소통 공간</p> </div> </div>
<p>4·5층</p>	<p style="text-align: center;">WELCOME TO TIPSTOWN</p> <p style="text-align: center;">독립된 업무공간, 휴게공간,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집중형 공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독립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독립된 업무공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중앙정원</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입주기업 전용 휴게공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카페·라운지</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입주기업 전용 휴게공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2%;">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공용 공간</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회의실과 OA공간</p> </div> </div>
<p>6층</p>	<p style="text-align: center;">WELCOME TO TIPSTOWN</p> <p style="text-align: center;">휴식과 충진을 위한 집중형 공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플레이 그라운드</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입주기업 전용 휴게공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플레이 그라운드</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입주기업 전용 휴게공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옥상 정원</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자연친화적 휴게공간</p> </div> </div>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기준표

□ 창업여부 기준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제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제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3**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